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61

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 한정애·조인철·주철현

김영배 • 어기구 • 박수현

추미애 · 송옥주 · 박희승

백혜련 • 정을호 • 김태년

김원이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·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하 여 수질오염물질,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배출·관 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하천·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, 과불화화합물 (PFAS), 잔류성유기오염물질(POPs),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, 소독부 산물 등 신종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현행 수질오염물질, 특정수질유해물 질 등의 목록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고, 생활하수의 오염부하량과 그에 따른 신종오염물질 배출이 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만 일부 감시 체 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 · 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

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9조의5 신설).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"신종오염물질"이란 하천·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로서 미세플라스틱, 과불화화합물(PFAS), 잔류성유기오염물질(POPs), 의약품 및개인위생용품, 소독부산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5(신종오염물질의 지정 및 공개)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·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 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종오염물질의 명칭, 유해성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의2. "신종오염물질"이란 하천
	•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
	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
	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
	물질로서 미세플라스틱, 과불
	<u>화화합물(PFAS), 잔류성유기</u>
	오염물질(POPs), 의약품 및
	개인위생용품, 소독부산물 등
	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
	<u>한다.</u>
9. ~ 19. (생 략)	9. ~ 19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제9조의5(신종오염물질의 지정
	및 공개) ① 환경부장관은 하
	<u>천·호소등에서 미량농도로 잔</u>
	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
	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
	기적으로 조사하여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
	염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
	한다.
	<u>L 1.</u>
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종오염물질의 명칭, 유해성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 사와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